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「법원조직법」(법률 제17125호, 2021. 2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고등징계위원회, 보통징계위원회, 소청심사위원회 간사의 소속을 ‘대법원 윤리감사관실’로 변경함(안 제95조제2항 및 제3항, 안 제112조의2제2항)
- 소속기관의 장이 법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그 징계의결요구사실을 통지하도록 실무상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96조의2)

4.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제2항 중 “법원행정처”를 “대법원 윤리감사관실”로 한다.

제95조제3항 중 “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임명한다.”를 “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,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.”로 한다.

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6조의2(징계의결 요구 통지) 제96조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2조의2제2항 중 “법원행정처”를 “대법원 윤리감사관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5조(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.</u></p> <p>③ <u>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중에서 임명한다.</u></p>	<p>제95조(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대법원 윤리감사관실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중에서,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제96조의2(징계의결 요구 통지) 제96조제1항의 경우 <u>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
<p>제112조의2(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</p>	<p>제112조의2(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직원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<u>법원행정처</u>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직원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----- <u>대법원 윤리감사관실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생 략)</p>

<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937